#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198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:정진술 의원(1명)

찬 성 자:고병국, 권영희, 김화숙,

문병훈, 박순규, 이세열, 이승미, 이은주, 임종국, 전병주, 최 선 의원(11

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효과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은 자율 적인 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 로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본 조례는 효율적인 교통안전의 봉사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나. 조례 내의 용어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녹색어머니회와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원 시책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(안 제4조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녹색 어머니회와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 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녹색어머니회"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서울특별시녹색어머니연합회를 말한다.
- 2. "어린이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녹색어머니회와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(이하 "녹색어머니회 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)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등 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어린이의 안전한 등·하교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
- 2.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
- 3.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- 제5조(재정지원) 교육감은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.
- 제6조(지원 중단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.
  - 1.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  - 2.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
  - 3. 교육감 등으로부터 활동 관련 시정권고를 받고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
  - 4. 그 밖에 재정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
- 제7조(권한의 위임)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8조(교육 등) 교육감은 녹색어머니회 등의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교통법규 등에 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9조(표창) 교육감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,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